■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구분	변경 전 자산운용전문인력(12명)		변경 후 자산운용전문인력(13명)		변경사유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성명	이동준	채온 김태윤 장세림 정상원 전태원 김진기 조인호 강병민 정순현 남효민 김재윤	이동준	채온 김태윤 장세림 정상원 전태원 김진기 조인호 강병민 정순현 남효민 김재윤 최연진	*등록* 최연진 (신규입사)

변경내역	■ 등록	□ 상실

변경내역	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	등록 : 주요경력(3년이내) 상실 : 상실 전 담당업무
	등록	차장	최연진	1990.05.05.	2026.08.24	리츠 투자운용 및 관리

우리 회사 소속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8월 18일

신청인 마스턴투자운용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요건 해당 여부 및 상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상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 상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